

교육과정위원회 규정

(2022.3.14. 명칭 및 조항 개정)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대신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교육과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(2022.3.14. 개정)
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각 학과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(2022.3.14. 개정)

② 교무처장과 각 학과(부)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. 단, 그 외의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(2022.3.14. 개정)

③ 사회의 흐름 및 다양한 의견 등을 반영하기 위해 외부전문가, 재학생, 학부모, 비전임 교원, 강사, 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. (2022.3.14. 신설)

④ 교육과정위원회 산하에 전공교육과정위원회, 교양교육과정위원회, 비교과과정위원회를 둔다. (2022.3.14. 신설)

제3조(임기)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 기간으로 한다. (2022.3.14. 개정)

제4조(가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교육과정(교양,전공,비교과) 편성과 개정에 관한 사항 (2022.3.14. 개정)
2. 교육과정(교양,전공,비교과) 연구·개발에 관한 사항 (2022.3.14. 개정)
3.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(2022.3.14. 개정)
 - 핵심역량 제고를 위한 교양교육과정 운영
 - 전공역량 배양을 위한 전공교육과정 운영
 - 교육의 질 관리
 - 비교과교육과정
4. 교육과정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 (2022.3.14. 개정)
5. 기타 교육과정 및 학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(2022.3.14. 개정)

제5조(회의)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사무) 위원회의 사무는 교무과에서 하고, 간사를 둔다.

부 칙

1. 이 규정은 200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이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.